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757
결재일자	2018.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진우	강해라	12/11 곽종빈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재난관리기금 소관부서 변경 및 정원조정 계획



201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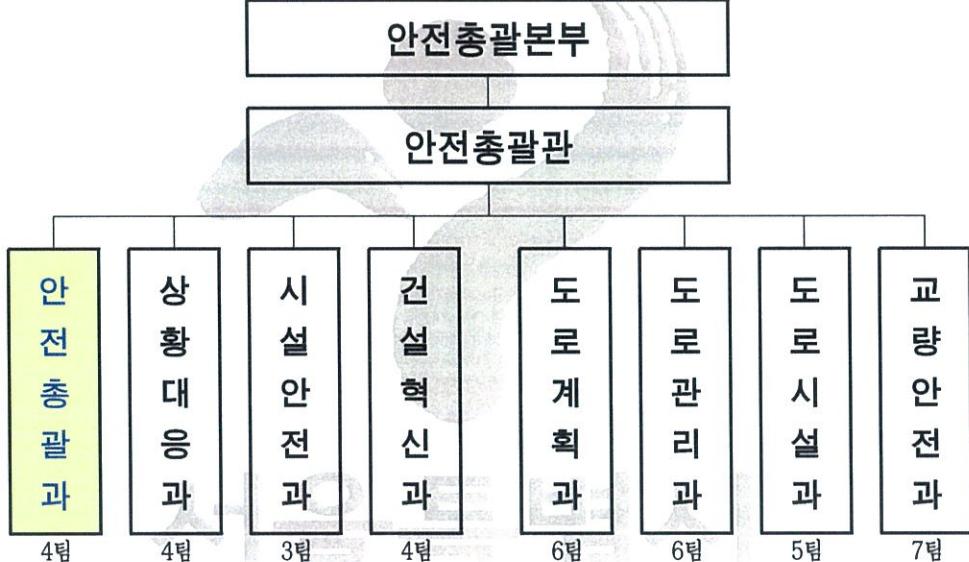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재난관리기금 소관부서 변경 및 정원조정 계획

재난관리기금 소관부서 변경(하천관리과→안전총괄과)의 적정성 및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영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안전총괄본부 현황('18.12.기준)

○ 조직 : 8과 39팀



○ 인력 : 정원 229명 / 현원 231명

(2018.12. 현재)

구 분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운영직군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이상	
정 원	229	208	2	8	45	88	61	4	-	16	1	7	8	-	-	5	1	4	
현 원	231	204	1	8	44	69	67	9	6	16	1	7	8	-	-	11	5	6	
과부족	2	△4	△1	-	△1	△19	6	5	6	-	-	-	-	-	-	6	4	2	

□ 검토 배경

- 우리시는 지진, 폭염, 미세먼지 등 새로운 안전위협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18.11.)
 - 민간건축물 내진 성능실태조사와 보강을 지원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더위 쉼터 마련, 방문간호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콘텐싱보일러 설치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
- 이에 재난관리기금 관리부서를 안전총괄 부서로 변경하여 풍수해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지진 등 다양한 재난환경에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증대

□ 검토 의견

① 재난관리기금의 적정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기금으로, 우리시는 '97년부터 재해대책기금으로 운영하였고 '03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운영
 - 하천관리과는 '05.06.16.부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¹⁾」에 재난관리기금 담당부서로 명시되었으며, '15.8.31. 도시 안전본부에서 안전총괄본부 및 물순환안전국으로 분리되면서 물순환 안전국에 소속되어 재난관리기금을 관리·운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평균액의 1%
- 재난관리기금 적립 총액 : 488,202 백만원 ('18.8.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3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법정 적립금	1,472,322	835,443	80,305	86,546	78,387	86,532	90,708	100,500	113,901

1) 1999.1.15. 제정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에는 재난관리기금 소관부서로 '방재기획과'로 규정됨

- 재난관리기금은 ‘빗물펌프장 시설 개선’ 및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등 풍수해 재난관리에 주로 집행되고 있으나, 최근 기후 및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 지출 분야 다양화
 -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대응’ (354백만원, ’17년), ‘장애인복지시설 및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48백만원, ’18년) 지출
- 안전총괄본부 산하 상황대응과는 ① 재난복구·수습대책의 수립·조정, ② 재난 긴급지원 및 통합대응체계 구축·운영 등 재난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도로관리과는 도로 제설·설해 대책 총괄 부서라는 점을 감안,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를 재난관리기금 운영 총괄부서로 지정할 경우 유기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하여 방재역량 강화 가능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시행 2015.8.31.) 제4조 제1항은 설해(雪害) 및 지진(地震)과 관련하여 기금사용 부서의장을 각각 ‘도로관리과장’, ‘상황대응과장’으로 명시
- 또한 재난관리기금 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근거한 법정사무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3호에서 안전총괄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총괄부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

② 업무 수행인력 증원 : 시설(토목) 7급 1명

- 하천관리과는 ’10년~’11년 대규모 침수피해 이후 추진사업 및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나 정원 및 현원은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증원 요청
 - ’10년 34개 사업(1,940억원)에서 ’18년 98개 사업(2,689억원)으로 증가
 -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인한 비상근무 및 풍수해 대책 수립 업무 증가

【정·현원 현황】

(매년 1.1.자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 원	27	26	26	27	27	27	24	24	25
현 원	33	31	35	35	33	32	29	28	28

【예산액 및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개)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	1,940	1,148	2,636	2,268	2,274	2,361	2,160	2,752	2,689
사업개수	34	23	60	71	67	86	104	126	98

- 하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담당자(방재안전 6급)는 재난관리기금 업무 이외에 ‘풍수해 분야 피해조사 및 수해복구’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바 하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업무 수행인력을 안전총괄과로 이관하는 것은 하천관리과에 업무부담 가중 우려 ⇒ 별도 기금 담당인력 증원 필요

※ 하천관리과 치수관리팀 정원 4명(토목 5급 1, 방재안전 6급 1, 토목 6급1, 기계 7급 1)

구 분	직 급	담당 업무
하천관리과 치수관리팀	방재안전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해분야 피해조사 및 수해복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수해복구분야 업무 - 풍수해 분야 국고지원 기준 관리업무 ○ 재난관리기금 계획 및 관리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기금 예산, 자금배정 관리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업무 - 재난관리기금 조례 및 위원회 관리 ○ 치수관리 분야 예산, 국회·시의회 업무 총괄 ○ 주간, 월간 업무보고 등 각종 자료 작성 제출

- 재난관리기금 주요 업무는 ① 기금사용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연 2회), ② 기금운용계획 수립(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③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²⁾ 운영(정기회 연 2회, 임시회 수시 개최) 등이 있음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현황】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심의 회수	29회 소집 6회 서면 23회	4회 소집 1회 서면 3회	6회 소집 1회 서면 5회	6회 소집 1회 서면 5회	4회 소집 1회 서면 3회	4회 소집 1회 서면 3회	5회 소집 1회 서면 4회
참석위원수 (연인원)	375명	58명	81명	73명	48명	50명	65명
심의 건수	673건	73건	90건	137건	138건	77건	158건
심의결정액 (백만원)	310,975	41,493	34,668	45,861	44,881	38,417	105,655

- 재난기금관리 담당자는 ‘기금의 적립 및 운영’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이외에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절차, ‘재난방지 시설’, ‘재난 복구사업의 관리’ 등 재난안전 분야 사무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필요
 ⇒ 시설(토목) 7급 1 증원(안전총괄과)

□ 조치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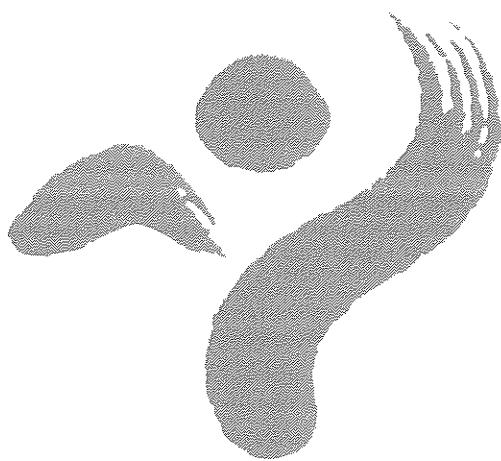
- 재난관리기금 운용 총괄부서 변경 (조례 개정 시)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안전총괄과(사회안전팀) 시설(토목)7급 1명 증원 ('19.1.1.자 시행)

2) 위원장(행정2부시장)과 부위원장 2명(물순환안전국장, 복지본부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9조)

행정사항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19.1.1.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 '19.4.(안전총괄본부)



서울특별시

불 임

안전총괄과 인력배정(안)

구분	업무 내용	정원	
		조정 전(31명)	조정 후(32명)
본부장	• 안전총괄본부 업무 총괄	【1명】 관리관 1	【1명】 관리관 1
안전총괄관	• 안전총괄본부 업무 총괄	【1명】 부이사관 1	【1명】 부이사관 1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업무 총괄	【1명】 서기관·기술서기관 1	【1명】 서기관·기술서기관 1
안전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복무·조직 운영, 시의회·국회 업무 • 주요업무계획 수립 • 심사평가(BSC, 지자체 합동평가 등) 관련 업무 • 시장 공약, 요청사항 (메모, 희망일기) 관리 • 행정2부시장 간부회의 운영 • 행정2부시장 산하 주요사업, 지시(요청)사항 관리 • 예산 편성 및 결산, 교육·훈련 •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업무 전반 	<p>【12명】 행정5급 1 행정6급 5 행정7급 4 ⑨행정7급 1 (홍보전문요원) 사무운영(워드)8급 1</p>	<p>【12명】 행정5급 1 행정6급 5 행정7급 4 ⑨행정7급 1 (홍보전문요원) 사무운영(워드)8급 1</p>
안전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안전정책 개발 및 지원 • 서울 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 추진 • 세계100대 재난회복력 도시사업 추진 • 안전도시 서울플랜 수립 • 안전자문단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도시안전지표 개발 • 선진도시 따라잡기 프로젝트 추진 • 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p>【6명】 행정·공업·시설(토목)5급 1 행정5급(실무사무관) 1 행정6급 1 방재안전·시설(토목)6급 1 행정·공업·시설6급 1 ⑨시설7급 1 (안전관리전문요원)</p>	<p>【6명】 행정·공업·시설(토목)5급 1 행정5급(실무사무관) 1 행정6급 1 방재안전·시설(토목)6급 1 행정·공업·시설6급 1 ⑨시설7급 1 (안전관리전문요원)</p>
안전제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안전제도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 안전대책 이행실태 점검체계 운영 • 건설안전 실태조사 추진 • 건설안전 문화정착 캠페인 추진 • 우수과학기술 발굴·활용 • 건설분야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 건설안전 종합개선대책 수립 • 사물인터넷 활용 스마트 안전관리 	<p>【4명】 시설(토목)5급 1 행정6급 1 시설(토목)6급 1 행정7급 1</p>	<p>【4명】 시설(토목)5급 1 행정6급 1 시설(토목)6급 1 행정7급 1</p>
사회안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안전지수 및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 • 안전문화협의회 운영 • 서울시 안전상 시상제도 •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 재난관리기금 운영 총괄 • 안전예산제도 및 소방안전 특별교부세 운영 • 안전문화진흥시책 수립 •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 및 지원 • 재난안전 민간 자율조직 관리 • 축제(행사)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안전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 안전마을 만들기 	<p>【6명】 행정·방재안전5급 1 행정6급 3 행정7급 2</p>	<p>【7명】 행정·방재안전5급 1 행정6급 3 시설(토목)7급 1 행정7급 2</p>